

지정번호 제 호

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 또는 단체명:
2. 대 표 자:
3. 소 재 지:
4. 교육훈련 내용:

「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12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